

안산지청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9. 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소속 (근무지)	계약기간	채용 인원	근무시간	보수	업무내용
기간제근로자 (시간제대체)	안산고용 센터	'26.10.1. ~'27.9.30.	2명	월~금, 13:30~18:00 (주 20시간)	기본급 1,053,150원 ※급식비 16만원 별도지급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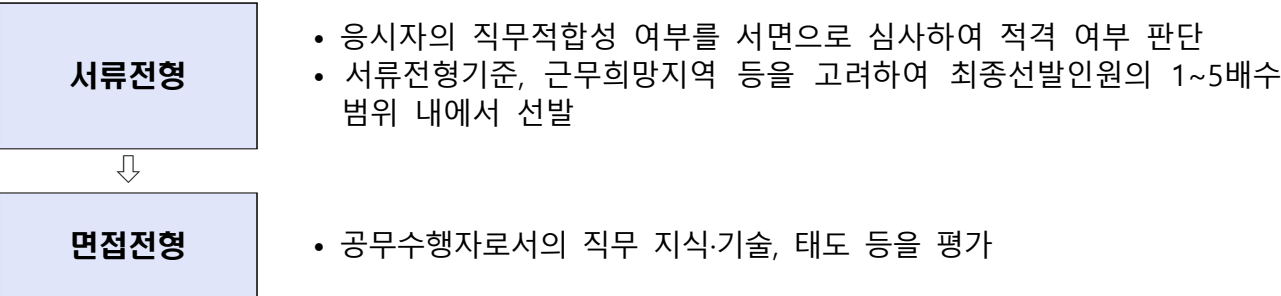
* 상기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 종료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 직업상담사 자격 보유자 • 관련 분야 경력자 ※ 세부우대 사항의 상세내용은 [IV.우대사항] 및 [V.접수서류] 참조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Ⅶ.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채용공고	2026. 9. 3.(목) ~2026. 9. 10.(목)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2026. 9. 3.(목) ~2026. 9. 10.(목) 18:00까지 접수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제출 • 안산지청 채용담당자 이메일(jdluvsme1@korea.kr)로만 접수 (반드시 위 3가지 서류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를 "1개"의 파일로 스캔(PDF)하여 제출)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하단 정자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15.(화)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026. 9. 21.(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23.(수)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IV 우대사항

○ 우대사항(서류전형)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노무 업무, 고용노동부 퇴직자,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에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의 상담업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교사는 초·중등 학교의 정교사를, 교수는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 강사 이상을 말함 ※ 고용노동 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란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을 말함 ※ 상담업무 경력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 및 진로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자격사항	직업상담사 자격증

○ 가산점(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적용)

구 분	우대사항	
가점부여 <서류·면접 전형>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10점) 또는 5%(5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사회형평 가점	○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제한 경쟁에서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1)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음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 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V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안산지청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제출 서류	대상
• NCS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2 서식 활용	원서접수 시 제출 (jxlvsme1@korea.kr)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3 서식 활용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법률에 따른 사회적형평대상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자료 및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1)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대한민국 국적취득자)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3)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외국국적자)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Ⅵ 근무조건

구분	보수수준 (월기준)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및 주요업무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원 대체인력)	기본급 1,053,150원 정액급식비160,000원	'26. 10. 1. ~'27 9. 30.	주 5일(월~금) 1일 4시간(주 20시간) (13:30 ~ 18:00)	안산고용센터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 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화·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원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031-412-1912, 이메일 jxluvsme1@korea.kr

○ 결격사유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붙임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직업상담원】

채용분야	직업 상담원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03. 전직지원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사업과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					
주요업무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내용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진로지도 등)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					
일반요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직업상담사 관련 업무) 고용관련 법률, 취업상담론, 직업정보론, 임금구조이론,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 이해, 직업정보 및 직업분류체계, 직종별 구인사이트 파악,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직업상담심리이론, 직업심리검사론, 직업상담 대상별 특성, 사업별 프로그램, 직무분석, 임금 및 근로조건					
필요기술	○ (직업상담사 관련 업무) 고용관련 법률, 취업상담론, 직업정보론, 임금구조이론,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 이해, 직업정보 및 직업분류체계, 직종별 구인사이트 파악,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직업상담심리이론, 직업심리검사론, 직업상담 대상별 특성, 사업별 프로그램, 직무분석, 임금 및 근로조건					
직무수행태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탐색의 적극성, 유사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력, 구인·구직자와의 공감대 형성 유지, 취업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 내담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 선입견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태도, 내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려는 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방적인 태도, 상담 대상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 전문성 유지 노력, 업무에 대한 사명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 의지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붙임2】

NCS 기반 입사지원서

지원 관서	안산고용센터	지원 분야	직업상담원 대체인력
-------	--------	-------	---------------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명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법정가점 대상 여부	☐ 대상(10%) ☐ 대상(5%) ☐ 비대상	사회형평가점 대상 여부	☐ 대상(3%) ☐ 비대상
------------	---	--------------	---

2.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업심리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3.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경험 혹은 경력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자 기 소 개 서

1.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그 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의사소통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규정준수] 지금까지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고객지향적 태도] 지금까지의 경험 중 타인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기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귀중

【붙임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장애 여부, 저소득층 여부 ☐ 직무관련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 과목 ☐ 직무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 자기 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 교과목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
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 산산지청장 귀하

【붙임4】 채용 서류 반환을 희망할 경우, 추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산산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